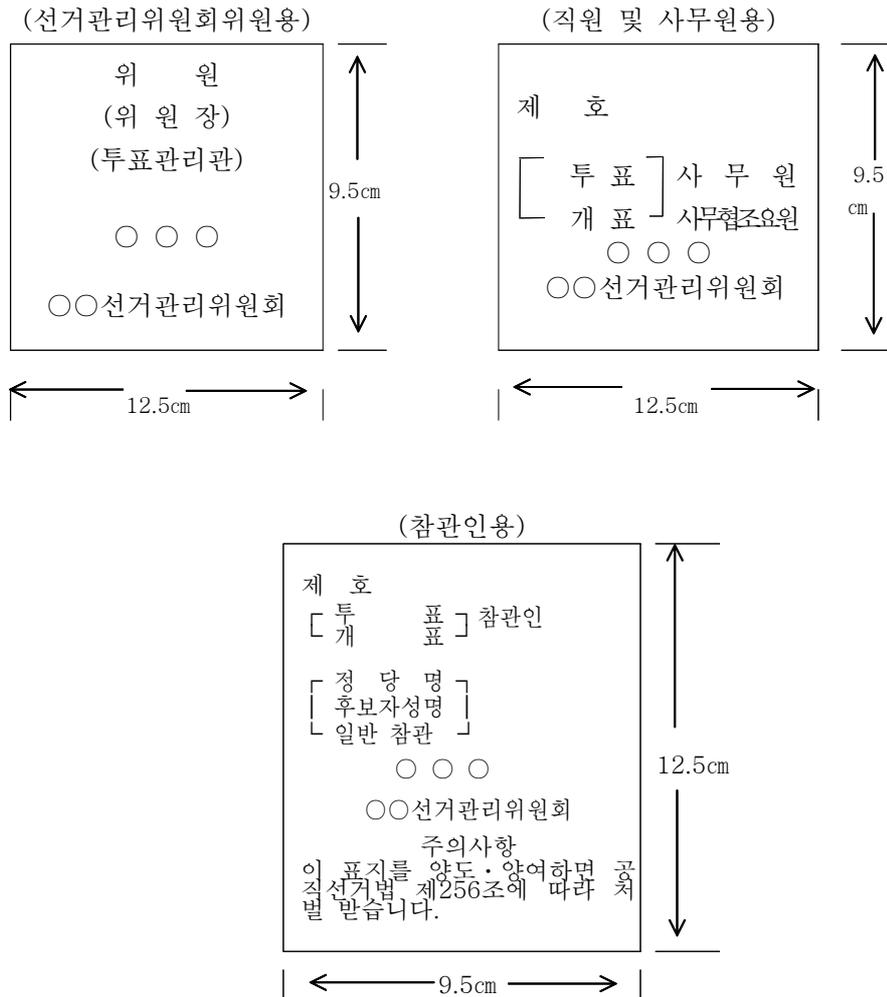


[별지 제52호양식] (규칙 제91조·제105조제1항 관련) <개정 2015.8.13.>

투표소·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출입자의 표지



- 주: 1. 표지의 바탕색은 선거별·신분별로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표지의 규격과 기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용 표지에는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명·직명·성명을 적습니다.
3. 위원장·위원·투표관리관은 성명 위에 "위원장"·"위원"·"투표관리관"으로 적고, 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은 성명 위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으로 적되, 표지의 다른 글자호수보다 크게 작성합니다.
4. 참관인용 표지의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선정 참관인은 "정당명"을, 무소속후보자선정 참관인은 "후보자성명"을 적으며, 개표참관인 중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참관인은 "일반 참관"이라고 적습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표지의 발급자 명의를 상급위원회로 적을 수 있습니다.